

제4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1. 8. 3.(수) 15:30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홍성규 부위원장
김충식 상임위원
신용섭 상임위원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4. 불참위원 : 없 음
5. 회의내용
 - 가. 성원보고
 - 나. 국민의례
 - 다. 개회선언
 - 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 - 마. 지난 회의록·속기록 확인

바. 의결사항

(1)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- (유)애플코리아 등 2개사 - (2011-45-157)

- 석제범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중 ‘이용자 동의없는 위치정보수집 행위’, ‘위치정보 보호조치 의무’를 위반한 (유)애플코리아에 대해 과태료 부과, 시정조치 등을 의결하고, ‘위치정보 보호 조치 의무’를 위반한 (유)구글코리아에 대해 시정조치 등을 의결함

- 향후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위치정보 보호 법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보고사항으로 접수 받음

○ 사업자별 위반사항 및 조치내용

① (유)애플코리아

- ① 사용자가 위치서비스를 종료했을 경우에도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 ⇒ 과태료 부과 : 300만원
- ② 휴대단말기 내 위치정보 캐쉬를 암호화하지 않아 위치정보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를 위반 ⇒ 시정조치 : 휴대단말기 내 위치정보 캐쉬에 소프트웨어 암호화 기술 적용
- ③ 업무처리 절차개선 권고 : 위치정보수집 방식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 교육

② (유)구글코리아

- ① 휴대단말기 내 위치정보 캐쉬를 암호화하지 않아 위치정보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를 위반 ⇒ 시정조치 : 휴대단말기 내 위치정보 캐쉬에 소프트웨어 암호화 기술 적용
- ② 업무처리절차 개선권고 : 위치정보수집 방식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 교육

○ 향후 법·제도 개선사항(보고사항으로 접수)

- ① 법의 과태료 상한액을 높이고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범위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된 처분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
- ② 사업자들의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치정보시스템의 정의 및 보호조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고, 향후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 가능성을 고려해 세부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고시 등으로 하향 입법
- ③ 또한,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관련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위치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정액 과징금 도입

사. 기 타

(1)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1. 8. 8(화). 오전 10시30분에 개최하기로 함.

6. 폐 회 (16:40)